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08.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4
1. 문제제기	4
2. 연구의 목적	4
3. 주요 연구내용	4
4. 연구방법	5
제2장 문제점과 현황 분석	6
1. 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관련 문제점	6
가.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한 법규정 문제	6
나.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문제	7
2. 현황 분석	8
가.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현황	8
나. 매립지 관할구역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분쟁예상 지역	9
3. 정리	10
제3장 선진국 사례 분석	11
1. 일본	11
가. 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1
나. 미소속 지역의 편입 및 구역결정 절차	12
다.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3
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16
마. 정리	17

2. 프랑스	18
가.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8
나.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22
다. 정리	23
3. 독일	25
가.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25
나.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확정 관련 현행 법규정과 결정 절차	27
4. 미국	27
가. 미네소타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27
나. 플로리다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28
다. 미네소타 주정부 소속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내에서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28
5. 영국	29

제4장 행정안전부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31

1.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개선방향 검토	31
가.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31
나. 연구진 검토의견	31
2.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확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상 발생되는 문제의 개선방향 검토	32
가.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32
나. 연구진 검토의견	33

참고자료 : 구역확정 및 경계변경 결정에 관한 관련법 비교 36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 현행법상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규정상의 확정절차가 없어 지적공부 등록과정에서 관련 자치단체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 절차는 자치단체의 명칭 결정과 함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관련 지역의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따라서 매립지에 의한 신규토지의 분할, 주민 생활권 확대, 지역개발, 유수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역이기주의,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당사자간 이해관계 등으로 안정적인 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 이에 경계변경과 관련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조정하거나 일치시키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확대 조정 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 관련되 법적 규정의 보완과 함께 실질적인 검토 절차와 분쟁해결 및 조정을 위한 관련 기구의 운영 등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특히, 신규토지와 매립지에 대한 구역확정 및 기존경계의 재조정 등에 관한 법규정의 제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그리고 신규토지로서의 매립지 관련 분쟁(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및
-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확인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들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한다.
- 특히, 자치단체간 주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 중에서 지방자치법상 미비된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관한 경계획정 및 변경에 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황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지역 중에서 일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 이러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경계변경 및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매립지의 경계획정 등에 관한 실정법 규정을 검토하여 현재의 제도적 획정절차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리하여 실증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끝으로 이러한 실증자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에 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 문제점과 현황 분석

1. 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관련 문제점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한 법규정 문제

○ 문제의 원인 : 3가지

- 현재 매립지, 미등록 섬 등 신규토지 (발생)에 대한 구역획정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항 역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 이와 함께 지적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경우와 같이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지적법 제3조 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시군구)이 결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결정"(제3조 제2항)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매립지와 같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 구역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확정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 이러한 3가지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문제의 발생

- 지금까지의 자치단체간 매립지 경계 확인방식은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경계를 확인하여 왔다.

○ **현행 판례사례**

- 그 결과 해상경계를 확인한 현재판례(평택-당진('04.9), 광양-순천('06.8) 권한쟁의)와 같이, 자치단체의 해상구역 확정에 있어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행정관습선 등 “중선”의 경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를 근거로 구역을 구분하여 확정한 바 있다.
- ※ 평택-당진간 권한쟁의는 제방에 대한 지적공부 이중등록에 따른 분쟁 사례이다.

○ **구역획정에 관한 법규정상 쟁점**

- 매립지 등 신규토지와 미등록지에 대한 관할구역의 결정, 경계의 확인 및 변경 결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령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확정에 대하여 지적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이 결과로 구역획정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자치단체간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즉, 이로 인하여 매립지, 미등록 섬, 해사채취 등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설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장기화 되어 왔다.

나.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문제

○ **문제의 원인 : 폐치분합에 대한 법규정 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고, 시군구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도를 제외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관련 기초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자연작용, 택지·도로 개발, 경지정리 등에 따른 소규모의 경계 변경에 대한 자율적인 합의사항까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 예를 들면, 최근 하천 흐름에 따른 지형변화(부산 강서-사상-북), 택지개발사업

(목포-무안)에 따른 경계변경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한 바 있다.

※ 외국사례 : 기초단체의 폐치분합·경계변경 관련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 :

- (일본) 시정촌의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은 관계시정촌의 신청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회 의결)가 정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
- 市 폐치분합은 도도부현지사가 하되, 미리 총무대신과 협의·동의 필요
- (독일) 게마인데 구역변경은 게마인데간 합의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바덴-뷔르템베르크 주)
- 게마인데 신설 및 강제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2. 현황 분석

가.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현황

○ 시군구간 경계변경 조정을 제기한 지역

- 한 단지 내 아파트 건물이 2개 구로 양분된 경우나(성동구와 중구 사이의 한진타운,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월곡시민아파트 등), 1개의 건물이 2개 구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동화빌딩) 등이 빈번하게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건물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상호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건물주 등의 경우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 부산시 안창마을의 경우에는(870세대) 부산진구 범천2동과 동구 범일4동을 중심으로 2개의 구 경계가 양분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 거주지를 선호하고 있다.
- 이외에도 주민생활권과 관련된 지역은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부와 전북 무주군 무주읍이 있고, 또한 900여명의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와 관련된 구역으로 순천시 황전면 일부와 구례군 구례읍 지역이 있다.
- 또한 달서구 용산동 및 죽전동 일부와 서구 중리동 구역은 주민 약 52,381명(16,064세대)이 관련되어 있는 바,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달서구청과 주민의 반대가 발생한 구역이기도 하다.
- 중구 다운동 일부와 남구 무거동간 주민등록 인구는 없으나 태화강의 유수 변

경에 따라서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지역으로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 시도간 경계변경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

-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는 지역분할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이다.

○ 사례

- 서초구 양재동 지역이나,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간은 동일부락, 동일 생활권이면서 노원마을을 중심으로 시도간 경계가 양분
- 주민들의 생활권은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이나, 행정구역상 하남시로 되어있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일부) 등이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
- 전국적으로 약 70여 지역들에서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매립지 관할구역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분쟁예상 지역

○ 시군구간 분쟁지역(일부)

- 인천 송도 신도시 매립지 :
 - 일부 공구는 매립 완료, 일부는 공사 중이나 향후 관할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등 관계 자치구간 대립·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 서해안 새만금 간척지 :
 -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설정 시 인접 지자체간(군산·김제·부안)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 인천 옹진-충남 태안간 해사채취관련 분쟁 :
 - 옹진군이 '04년 민원발생으로 해사채취 허가증지 중 태안군이 같은 해역에 해사채취를 허가
 - 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05.5).

○ 시도간 분쟁지역

- 부산신항 매립지에 관련한 부산-경남간 분쟁 :
- 부산신항 부지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양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05.11 / '07.1).

3. 쟁점 정리

- 현행 관할구역 경계설정 및 조정에 관한 법규의 미비
 -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정하거나 경계를 확인하는 법령규정에서 매립지 등 신규토지와 미등록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 이로 인하여 지지체의 관할구역이 지적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장의 지적공부 등록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매립지, 미등록 섬, 해사채취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 상황이 장기화 되어 왔다.
 - 또한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을 포함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분쟁해결을 권한쟁의 심판에 의한 분쟁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관련 주민들의 생활권 및 경제활동에도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구역획정 관련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헌법재판 절차의 불필요
 -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획정·확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적 성격의 국가행정 권한에 귀속되므로 권한쟁의 절차는 불가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조정 결정 및 그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의 경계획정 및 변경에 관한 관련법의 근거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 및 헌법재판 절차의 불필요 등의 실증적 근거를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계설정 및 구역획정 법규정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 선진국 사례 분석

1. 일본

가. 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 도도부현의 경계변경 법적 규정

- 일본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도도부현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고,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정촌의 경계변경 법적 규정

-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시정촌의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에 관한 일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규정의 경우는 특별구의 폐치분합·경계변경(지방자치법 제281조의4) 및 시정촌합병특별법이 있다.
- 즉, 시정촌의 폐치분합 및 경계변경의 경우는 자치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시정촌의 신청에 의해서 도도부현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도도부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총무대신의 고시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시정촌의 폐치분합·경계변경의 일반절차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

- ① 관계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신청
- ② 도도부현의회의 의결과 도도부현지사의 처분 :
 - 주민의 복리에 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본지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사는 그 처분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의회

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 폐치분합에 관해서는 사전에 총무대신에게 협의하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도도부현지사가 총무대신에 신고하고 지사의 처분 효력은 총무대신이 고시를 한 후에 발생하게 된다.

④ 총무대신의 고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지의무로 효력이 발생한다.

-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시정촌의 경계변경을 결정하는 권한을 총무대신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대신은 도도부현지사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경계획정시 주민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도 이 결정이 지사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시정촌의 주민은 도도부현지사가 정한 시정촌합병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판례: 1995년 판례집, 最高裁 昭和30. 12. 2).

- 이에 따르면 주민의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으며 시정촌합병의 신청의 집행정지, 중지를 구하는 소에 대해서도 같다고 해석한 바 있다.

4) 도도부현의 경계에 걸친 시정촌의 경계변경

-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서는 도부현의 경계에 걸친 시정촌의 경계의 변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시정촌의 경계변경에 대한 예외로 보인다.

나. 미소속 지역의 편입 및 구역결정 절차

-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의2에서는 종래 지방공공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새롭게 생긴 지역(미소속 지역 또는 토지)을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편입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① 지방자치법 제7조의2에 의해서 하는 경우, ②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이다.

- ①의 사례 :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내각이 결정한 사례 : 예를 들면 青森縣 및 秋田縣 먼바다에 존재하는 久六島를 내각이 青森縣구역에 편입할 것을 결정한 적이 있다(昭和28년, 1952년 히사로쿠지역에 대한 내각결의에 의한 구역 결정).

다.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 특별법 처리 사례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 지방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시정촌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처리한 바 있다.
- 예를 들면 1943년의 동경도제의 실시에 수반하여 동경시가 폐지되고 八朗瀨의 매립에 수반하여 새로운 大瀨村이 탄생하고 일단 일본의 시정권에서 이탈했던 지역이 복귀함에 따라 당해 지역에 있는 시정촌이 지방자치법상의 시정촌으로서 존속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서는 제7조에 따른 폐치 분합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된 바 있다.
- 즉, 八朗瀨는 당시의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으로는 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대규모인 공유수면의 매립에 수반한 촌의 설치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昭和39년 법률 106호)”을 제정해서 내각이 관계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촌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奄美群島에 대해서는 “奄美群島の 복귀에 수반한 법령의 적용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昭和28년 법률287호)”, 小笠原諸島에 대해서는 “小笠原諸島の 복귀에 수반한 법령의 적용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昭和43년 법률83호)”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2)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결정에 관한 법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의2)

○ 본 조항 규정내용

- 제9조의2(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의 결정)
- ①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변경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시정촌의 동의를 얻어서 도도부현지사가 당해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결을

- 거쳐서 결정하고, 즉시 그 뜻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②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변경으로 도도부현의 경계에 걸친 것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총무대신이 정한다.
 - ③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에 관해서 쟁론이 있는 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도부현지사는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당해 조정에 의해서 시정촌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때 혹은 모든 관계 시정촌이 재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는 때는 이것을 재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변경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의 재정은 당해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앞 3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당해 매립의 준공인가 또는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 ⑥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9항 전단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

○ 본 조항 신설 이유

- 새로운 경계변경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함이다.
- 본 조항은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변경 및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에 관한 쟁론의 처리절차의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 1961년 1월 개정하여 추가하였다.
- 개정 이유는 시정촌간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속에 대한 의견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공유수면 단계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관계 시정촌의 경계결정, 변경 또는 확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 공유수면 수역에 있어서 '종전'의 경계가 비록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매립해서 이용하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사회의 일체성 유지, 그밖에 행정상, 사회상의 필요에 기초해서 다른 관점에 기초해서 별개의 경계가 정해

져야 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매립지 분쟁에 대하여 사전 해결장치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 본 조항은 많은 시정촌에 걸친 공유수면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매립 후의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매립지의 소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를 정하도록 개정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규정이다.

3) 판례

-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 확정에 관한 판결례(和歌山地方裁判所, 平成4(行ウ)1, 平成7年3月1日)

○ 사건 개요

- 和歌山縣海南市와 인근 有田市간에 和歌山마리나시티 주변의 매립지 경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이는 시정촌의 공유수면상의 시정촌의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등거리선주의에 근거해서 경계를 확정판례이다.
- 이 판례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의한 조정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계 시정촌은 법원에 시정촌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9항을 적용하여 확정판례이다.

4) (매립지를 포함한) 신규토지의 귀속 확인

○ 법규정

- 일본 지방자치법 제9조의5(새롭게 생긴 토지의 확인)
- ① 시정촌의 구역내에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때는 시정촌장은 당해 시정촌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뜻을 확인하고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는 도도부현지사는 즉시 이것을 고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검토

- 신규토지는 매립지에 의한 새로운 육지 형성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조항은 1961년 개정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전의 소속 미정지 편입처분의 제도가 폐지되고 동법 제9조의2~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촌 구역 내에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뜻을 확인하는 처분만으로 충분한 귀속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 분쟁 해결절차는 행정적 수단과 사법적 수단으로 구분하고, 행정적 수단은 일본 지방자치법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조정, 도도부현지사가 행하는 재정이 있다.

○ 행정적 수단

- 자치분쟁처리위원회의 조정 :
-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당사자간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도도부현지사는 자치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나 지사가 재정을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도 아니다.
- 다만, 자치분쟁처리위원회는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3명을 임명하며 당사자 전원이 수락할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조정안을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합의가 되었음을 통지하여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도도부현지사에게 의한 재정(직권처분) :
- 도도부현지사가 직권으로 행하는 재정(처분, 공권적 행위)은 관계 시정촌간의 법률상 쟁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법적 수단

- 자치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의한 재정 등의 행정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적당하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마. 정리

-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 및 경계변경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공유수면의 매립지 경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도도부현의 경계 및 구역변경은 정치행정과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 경계변경에 관해서는 일본 현행법상 관계 시정촌과 도도부현 지방의회의 참가를 수반한 국가사무로서 도도부현지사의 결정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자격)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법정수탁사무에 해당한다(일본 지방자치법제7조).

2. 프랑스

- 단일국가 체제 하에서의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성
 - 단일국가의 주권성은 법적 구조를 갖춘 국가만이 국가주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로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성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법적) 권한은 모두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행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가.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

- 법규정과 원칙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과거 토지대장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국가의 대표자인 임명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한 현재의 활용성과 주민의 이익과 관련한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한다.
 - 필요시 임명도지사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의 임명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 이는 해상경계와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경계구역 설정에도 적용된다.
 - 또한 이의를 제기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이 모든 행정결정에 대한 분쟁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행정법원은 국가 도지사의 결정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행정법원에서 대신하여 경계설정을 결정한다. 이때 행정법원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1조 경계의 설정
 - 동일한 도 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관련되는 경계설정에 있어서 분쟁은 국가의 대표인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 두 개 이상의 도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간 경계설정에 대한 분쟁은 정부령으로

결정한다.

○ 기초자치단체간 경계 설정에 관련한 판례

- 해상경계 등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간 경계 설정에 대한 판례 (CE. Sect. 20 févr.1981, Cne de Saint-Quay-Portrieux: Rec. CE 96)
- 국가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활용성 (토지세 징수체제, 선거인명부 등록관리, 도로유지 및 관리성 등의 고려)을 최대한 고려하고 (판례 : CE, Sect., 17 juin 1938, Ville de Royan: préc. Note 1),
- 또한 편리함(관련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지리적 상황에 맞게, 자연적 유형을 고려하고, 토지의 특성, 재산소유의 편리한 분할 용건, 경제적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판례: CE 18 janv. 1985, Cne de Mélesse: Rec. CE 12 Dr. Adm. 1985, n° 127).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기존의 토지대장상의 경계와 국가의 도지사가 결정한 경계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결정이 더 유효한 것으로 본다 (판례: CE 1 juin 1984, Cne de Vieux-Boucau: Rec. CE 195, Quot. Jur. 9 oct. 1984).

○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시행과 관련한 판례

- 국가의 도지사는 두 기초자치단체 경계설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는 과거의 토지대장상 자연지리 경계 설정 지점이 없을 경우 토지대장 경계지점 등에 기초하여 지형조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감정을 할 수 있다 (판례 : CE 22 févr 1956, Cne de Calonne-Ricouart: Rec. CE 632).
- 충분한 지리적 여건이나 과거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과거자료 등이 없을 경우 국가의 도지사는 관습과 현재 유용한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판례 : CE 16 nov. 1984, Cne de Port-Marly: préc. Note 6).

2) 경계의 변경에 필요한 전문조사 및 공공조사의 시행에 관한 규정

○ 법규정과 원칙

- 경계변경에 관한 공공조사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권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명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공공조사 시행을 할 수 있다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2조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과 신청사의 이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그리고 청사이전 계획과 그 조건 등에 대하여 조사결과 후에 결정한다.
- 관련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또는 문제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선거권자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국가의 도지사는 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간 합병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가 의무적이지는 않다.
-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지역(경계)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의 경우 또는 일부 지역을 분리해서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경계변경에 관한 공공조사의 법적 규정과 원칙

- 기초자치단체간 합병시 경계변경에 관한 공공조사가 의무적이지 않다. 다만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이를 요청하거나 선거권자인 주민들이 이를 요구할 경우 공식적으로 공공조사를 명할 수 있다.
- 국가의 도지사는 공공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 재량권을 가진다.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중에서 위원 선임도 가능하나, 위원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또는 주민 중에서 선임도 가능하다.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3조

- 국가의 도지사는 경계의 변경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도지사령으로 결정한다.
- 주민 중에서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련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고, 토지에 따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선거권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단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 지방의원 중에서 위원 선임도 가능하다.

3) 기초의회의 의견제안권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4조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의무적으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4) 관할 도의회의 의견수렴권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6조
- 기초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에 대한 모든 계획은 해당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선거구역의 변화를 초래할 경우, 경계변경 계획에 대하여 기초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수렴은 필수적이다.
- 그러나 국가(의 임명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이나 결정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5) 국가 임명도지사령에 의한 경계변경 결정 및 공포

- 법적 규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5조 경계설정 결정 및 공포
- 기초자치단체간 경계의 설정은 국가의 도지사령으로 공포된다. 다만 경계설정에 대한 결정이 선거구역의 변경 효과를 가져올 경우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

- 판례: CE 13 juill. 1961, Cne de Rosenau: Rec. CE 481 AJDA 1962. 171
- 즉,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율적 결정은 무효이며, 반드시 국가의 도지사 결정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 기타
- 지방자치법 제L.2112-7조 : 경계의 변경에 따른 재산 귀속권자의 변경 필요

나.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1) 도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

- 도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법률에 결정한다. 다만, 도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경계변경이 가능하다.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3112-1조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

- 도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은 관련 도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로 결정한다. 다만, 관련 도의회가 경계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하여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
- 도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가능하다.

2) 지역(광역도)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

- 지역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법률로 결정한다.

○ 근거법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4112-1조 지역자치단체의 경계변경

- 지역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은 관련 지역의회와 소속 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로 변경한다.
- 지역자치단체의 경계변경 요구는 지역의회 또는 소속 도 지방의회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동일한 지역에 속하지 않은 해안지역의 도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국사원령(시행령)으로 이를 정한다. 또한 지역의회와 도의회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역의 경계변경은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

다.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관련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

- 법규정의 일반적인 경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 정리

1) 법적 기본원칙

-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은 국가의 지방대표자인 임명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서(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1조), 지리적 상위 계층의 지역 및 도간 행정구역 분쟁은 법률과 정부령(시행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관할구역 경계변경협의위원회 구성 후 국가가 결정

- 자치단체의 지역경계 변경 시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L.2112-3조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행정권자(관할 임명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 자치단체가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일부 구역을 양도한다고 결정할 때, 관할 행정구역 내 임명도지사는 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검토 및 수렴할 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는 임명도지사가 결정한다. 관련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관련구역 내 선거권을 가진 주민, 실질적인 거주지를 가진 주민, 구역 내 선거권 등록이 된 토지소유자 등도 위원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관련지방의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L.2112-4).
-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계구역변경에 관한 모든 계획은 도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결정이 반드시 도자치단체 의회 의견에 일치할 의무는 없다(지방자치법 제L.2112-6).

3) 경계분쟁의 해결 절차

- 두 자치단체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는 반대심리방식을 따라 각각의 당사자인 자치단체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가의 임명도지사만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 임명도지사는 두 자치단체간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에 경계설정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전문가는 과거 토지대장 또는 행정문서 상의 자연

경계설정 준거(기준도로, 토지세 부과기준 등)가 없을 경우 토지대장(계획)안에 근거한 지형적 경계설정을 결정하게 된다.

4) 판례

- ‘종전’의 토지대장 상의 구역경계 상황보다는 현재 상태의 기초자치단체 경계구역 설정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보고에 기초한 행정구역 경계선이 행정적으로 더 유효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사원 1984년 6월 1일 판결, Cne de Vieux-Boucau : Rec. CE 195, Quot. Jur. 9 oct. 1984).
- 또는 차선택으로 행정당국은 전통적 선례, 관습 등에 근거하여 경계설정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분쟁은 지금까지의 전통성을 갖는 경계설정 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명도지사가 경계를 결정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법원 판사가 행정기관의 경계결정을 최소한 판결을 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서 경계설정을 명시한다. 행정법원은 이때 마찬가지로 경계설정 조사 권을 발동할 수 있고, 전통적 선례, 관습 등에 근거하여 경계설정을 할 수 있다.

3. 독일

가.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지역고권(Gebietsshoheit)인 영토관할권이 보장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고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을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Gebietsänderungen)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연방국가의 주정부간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과 절차

- 독일 헌법 제29조 제2항 ① 연방국가의 경계변경 조치, 즉 주정부간 경계변경의 경우는 국민결정(Volksentscheid)의 결정으로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 제3항 ② 연방국가의 경계변경은 관련 변경구역의 국민에 의한 투표결정으로 확정된다
- 동조 제4~5항에 의하면 국민발안에 의하여서도 주정부간 구역개편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민발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민 중에서 연방 하원의 회 선거권자 1/1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과 절차

- 독일 헌법 제29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계약(Staatsvertrag)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고, 이것은 연방 하원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각 해당 주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법률로 확정한다.

○ 자율적 합의

- 지방자치단체간 합의(Vereinbarung)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계변경이 확정되지

만,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청문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덴-뷔르템베르그주, 브란덴부르그주, 맥클렌부르그-포아폼메른주, 자아란드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가 이에 해당된다.

○ 법률에 의한 경계변경

-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을 법률로 결정한다.
- 사례 주 :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이다.

○ 중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계변경은 주정부 결정 또는 정부령으로 결정

- 경계변경이 예외적으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나 주정부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 사례 주 : 니더작센주, 헤센주 등이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경우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련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률로 결정하지만, 그 중요성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경계변경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행정행위(Verwaltungsakte)의 하나인 행정처분상 결정이나 정부령에 의하여 확정한다.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지방자치법상 법규정은 제15조-제20조가 관련된다.
- 경계분쟁에 관한 결정은 상급기관인 주정부(내무부장관)가 행사한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실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토지들로 구성되며, 이의 경계에 관한 분쟁은 감독청이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모든 영토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곳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주정부 내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계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법률로 정한다.

나.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관련 현행 법규정과 결정 절차

- 매립지를 둘러싼 2개 주 이상의 경계분쟁의 경우 주로 국가공공계약 (Staatsvertrag)의 방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 따라서 그 하나의 사례지역으로 도시이면서 주정부인 <함부르그, 니더작센,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간의 연안공유수면과 하구구역의 재판관할에 관한 국가공공계약에 대한 법률>이 사례가 된다.
- 즉, 각 관련 주정부간 합의를 통해서 행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공계약 법률로 제정하여 영토관할을 확정한다.

4. 미국

- 지방정부의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가. 미네소타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1) 지방정부의 설치, 폐치분합, 구역변경시 경계조정권

- 미네소타 주정부내 지방정부들 간의 경계조정은 과거에는 미네소타주 자치위원회(The Minnesota Municipal Board)에서 수행하였으나, 1999년 6월 1일 이후 그 권한과 책임이 전략기획국(The Office of Strategic and Long-range Planning, 약칭 『Minnesota Planning』)으로 이관되었다(미네소타 주법 414.11).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계변경 및 조정에 관한 총 책임과 권한은 주정부의 전략기획국장에게 귀속된다.

2) 상시 경계조정팀 운영

- 전략기획국은 지방정부의 경계변경과 관련된 자문과 법률정보 제공, 경계변경에 따른 갈등 중재, 절차상의 협조지원 및 공청회 실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경계조정팀(Municipal Boundary Adjustments)』을 설치 운영하고 있

다.

3) 결정 절차

- 주민발의 등 경계변경의 조정 등을 위한 신청에 대하여 전략기획국은 <지방정부 경계조정팀>을 통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의 기준을 참조한 후 경계변경 확정명령(order)을 내리게 된다.

나. 플로리다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 합병을 규정한 합병조례에 지방정부의 각 관할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합병을 결정하면, 합병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의 50% 이상 찬성한 서명으로 시정부가 정례회의를 거쳐 합병지역에 관한 경계변경선을 재규정한다.

○ 법근거

- 플로리다 주정부 법률 (Florida Statute, Chapter 171. Part I. Municipal Annexation or Contraction)

○ 지방정부간 서비스 경계협약 방식의 활용

- County 정부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정부들 또는 독립적인 특별서비스 자치구 간에는 물리적인 경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지역간 서비스 경계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계변경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할구역에서의 서비스전달, 재정책임, 또는 경계조정에 관련된 어떤 쟁점이든지 계약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법근거 : Florida Statute, Chapter 171. Part II. Interlocal Service Agreements)

다. 미네소타 주정부 소속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내에서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 현황

-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헌장에 근거하면 1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인구규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구역은 선거구와 일치하

며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1인의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시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구역변경은 선거구 조정과 항상 연계되어 있다.

○ 위원회를 통한 구역재획정

- 미네아폴리스 시에서의 행정구역 조정은 특정 시기(매 10년)에 「행정구역 재획정위원회(Reapportionment Commission)」에서 인구규모의 균등성 등을 고려한 구역 재조정 기준을 참조하여 구역경계계획(Ward boundary plan)」을 수립하여 참고한 후 결정한다.
- 행정구역 재획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시 선거권을 가진 시의회, 주요 정당, 일반 유권자가 추천한 사람들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5. 영국

○ 지방정부에 대한 명칭 결정 및 행정구역 획정 등에 관한 법규정

- 1972년 지방정부법 제70장 Part I Local Government Areas and Authorities in England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정부 행정구역과 지방정부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중 New local government areas.
- 이 규정의 제1조 제2항에서 “각 지방정부의 구역은 현행 법률의 관련규정에서 제정한 것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장관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제1조 제3항).
- 특히 인구가 85% 이상인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지방정부가 설치되거나, 폐치분합에 의한 지방정부의 경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방정부 소관 장관의 지시(direction)에 의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재검토(Reviews)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Part IV, 제 46조 제1항 및 제47조 이하).

○ 구역재획정을 위한 경계조정위원회

- 지방정부의 경계변경 구역변경 등에 대해서는 1972년 지방자치법 제4장에서 2개의 중앙부처 중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 즉, 잉글랜드 지방정부경계조정위원회(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웨일즈 지방정부경계조정위원회(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for Wales) 등이 그것인데 199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 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 for England and for Wales)로 대체된 바 있다.

○ 경계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주무장관의 결정권

- 이들 경계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로써 지방정부의 일부경계조정을 포함하여 폐치분합에 의한 경계조정 및 선거구 재획정 등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의견을 결정하여 자치정부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 경계조정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 다만, 경계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자치정부의 주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렴하여 전체 정책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간 경계조정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4장 행정안전부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시도 및 시·군·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개선방향 검토

가.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1) 폐치분합 (현행유지)

- 행정구조와 지방자치 단위를 설계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2) 경계변경 (법률,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시·군·구) 경계변경은 국가사무이므로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3) 개선 후 기대효과

- 시행령으로 경계변경 확정을 가능하게 할 경우, 즉 둘 이상의 시·도 경계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계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 법률 개정 없이도 해당 시·도 경계도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진 검토의견

- 상기 프랑스와 독일 등 외국 사례로부터 검토한 근거와 이들 국가의 법규정과 분쟁 해결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시도 경계변경의 중요성에 대한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시도 및 시군구의 경계변경은 모두 국가사무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행대로 시군구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실효성을 갖고, 시도의 경계변경은 법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보다 세부적으로,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에 있어서 실제로 관련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결과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폐치분합에 대한 사안을 이와 같이 관련 자치단체간 (주민투표를 통한) 합의를 도출한 경우에는, 주민의 자주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자치정신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국가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그 자율적 결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 그리고 시군구의 폐치분합에 대하여 관련 시군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공포하고, 다만 경계변경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 다만, 시도간 폐치분합과 경계변경(확정)에 대하여서는 시도자치단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도 경계는 다수의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행정권 영향력이 큰 관계로 접경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모두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그리고 시도간 경계변경은 폐치분합과 관계없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2.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상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방향 검토

가.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법적 미비 → 행안부장관 처분)

1) 경계확인 (현재의 권한쟁의 심판 → 행정구역위원회의 의결 → 행안부장관 처분결정)

-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경계를 확인해 오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행정구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확인한다.

2) 절차 개선안

① 구역 확정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조성한 토지나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 "종전" 구역과 다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대상

- 매립지 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섬 등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안부장관에게 구역의 확정 또는 경계 확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
- 미등록 토지의 경우 인접한 자치단체의 이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구역의 확정이나 경계 확인을 신청
- (특정 해역) 경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은 행안부장관에게 구역의 확정 또는 경계확인을 신청

③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안부장관에게 구역의 확정 또는 경계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함
-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정하거나 경계를 확인하고
- 그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함

④ 소송

- 관련 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 구역을 정하거나 경계를 확인한 것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나. 연구진 검토의견

- 현재 매립지, 미등록 섬 등에 대한 구역확정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행정구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역획정을 결정한다.

1) 구역 및 경계 확정에 관한 기본원칙

시군구간 경계변경 및 구역획정은 관할 시도지사와 광역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참조하되 이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관련 시군구간, 관할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등의 이견에 대하여 행안부장관은 전문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경계변경을 결정한다

다만, 관련 기초자치단체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인정하고 결정하고 장관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또는 장관의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시도간 경계변경은 법률로 결정하되, 행정구역위원회의 의결을 참조하여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한다

2) 시도 및 시군구 내의 경계변경(미비 → 시도지사 처분 결정 → 행안부장관 처분)

시도 내의 경계변경에 관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상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국가사무이므로 구역획정에 관한 참고가 되는 ‘중전’의 자료가 존재할지라도 현재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을 확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새로운 전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시도지사와 광역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검토

○ 원칙

- 시도 및 시군구의 경계변경은 모두 국가사무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행대로 시군구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실효성을 갖고, 시도의 경계변경은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설치필요성

- 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할 구역을 획정 또는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자치단체간 합의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획정 및 변경 확인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산하에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위원회의 성격 : 자문기구

- 폐치분합의 결과는 법률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구역획정과 경계변경에 대한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처분에 귀속되는 권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행정구역위원회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권으로 장관의 결정권을 귀속하도록 하면 국가사무 수행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규모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한 중립적인 심의기구로 행정구역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되, 전문성에 대한 판단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는 권고사항(안)을 제안할 뿐 기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 결정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자문 성격의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다.
- 이는 행안부장관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 등에 관한 행정처분에 의한 결정권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구역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관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결정에 관한 관련법 비교

- 일본 : 지방자치법
- 독일 : 연방헌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 제19조 (이하 원본)
- 미국 : 플로리다 주정부 법률 (경계변경 : Florida Statute, Chapter 171. Local Government Boundaries)
- 프랑스 : 지방자치법전

※ 원문은 하단에 제시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구역조정절차			제19조 구역개편절차 : 구역지자체들은 자신의 구역 개편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기 앞서 감독청에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모든 구역개편이 있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의회에 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주민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의 구역개편으로 인해 경계가 바뀌게 되는 지자체 연합의 견해도 청취되어야 한다.	171. 0413 합병절차 (5) 합병예정지역의 70%이 상의 토지가 그 지역이 유권자로 등록된 선거권자가 아닌 개인들, 단체들, 또는 이들의 소유일 경우, 그 소유자들의 50%이상이 동의할 수 없 다. 그 동의는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합병을 원하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	제L.2112-3조 자치단체의 구역경계 변경 시 국가대표 행정권자 (국가임명도지사) 가 구역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자치단체가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일부를 양도한다고 결정할 때, 관할행정구역 내 임명도 지사는 이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검토수렴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폐치분합 및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함(\$4①) * 지방의회 의결수령 또는 주민투표 실시(\$4②)	·도도부현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함(\$6①) ·도도부현의 경계는 도도부현간 경계에 걸쳐있는 시정촌의 경계 변경시 자동적으로 변경(\$6②)	제19조 구역개편절차 : 제3항 ① 지자체의 경계변경에는 법률을 요한다. ② 치단체는 각 실시되는 지역간의 일간지에 주민투표날짜가 약 그것이 주정부 행정구역 (Regierungsbezirken)의 경계 변경과 맞물려 있을 때에는 베치르크 번호, 시간과 장소, 그리고 (Bezirkregierung) (국가의 지방행정청)를 통해서도 지자체의 경계 변경이 논의될 수 있고, 이 경우 주 내부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③ 작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잘려져 나가는 구역이 지자체 구역의 10/1보다 작거나 해당 지자체의 인구가 총200(3) 미만인 경우 또는 이 앞의 ②,③항은 지자체의 경계 변경이 법률로써 이루어졌고, 동 법률이 효력을 발한 후 이미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지자체의	는 지역에 대한 합병조례를 채택하고 시정부의 경계선을 재정의한다. 그 조례는 신문에 2주 연속으로 한 번씩 공고를 낸후에 의결을 한다.	구역 내 선거권을 가진 주민, 실질적인 거주지를 가진 주민, 구역 내 선거권 등록이 된 토지소유자 등도 위원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관련지방의 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함(\$4①) ·시·군·구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4①)	·시정촌의 폐치분합·경계변경은 관계 시정촌의 신청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도도부현 의결을 거쳐) 정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7①) ·시의 폐치분합은 총무대신 사전동의 필요 ·도도부현의 경계에 있는 시정촌의 폐치분합·경계변경은 관계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총무대신이 정함(\$7③)	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가 총200(3) 미만인 경우 또는 이 앞의 ②,③항은 지자체의 경계 변경이 법률로써 이루어졌고, 동 법률이 효력을 발한 후 이미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지자체의	지방자치법 제L.2112-6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구역변경에 관한 모든 계획은 도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결정이 반드시 도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에 일치할 의무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L.3112-1 : 도의 경계변경은 관련 도의회의 의결수령 후 법률로 정한다. 다만 도의회가 경계조정에 대하여 찬성할 경우에는 국사원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p>·관련규정 없음 * 지적공부의 등록으로 사실상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짐(지적법§3)</p>	<p>·공유수면에 의한 시정촌의 경계 변경은 관계 시정촌의 동의를 얻어 도도부현지사가(도도부현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9의3①) ·도도부현의 경계에 걸쳐있는 것은 관계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동의 얻어 총무대신이 정함(§9의3②) ·시정촌의 경계에 관하여 쟁론이 있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는 자치분쟁처리위원의 조정에 부의 (§9의3③) - 당해 조정 불복 또는 관계 시정촌이 모두 제정에 동의할 때에는 제정 가능</p>	<p>·경계 변경을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하는 법규들은 여전히 효력을 발한다. 제4항 법률이나 위의 제3항 ②문에 따른 결정에는 구역개편계약이나 구역개편의 세부사항에 관한 감독청의 약정사항(Bestimmungen)들이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p>	<p>합되지 않지만 만일 합병을 원하거나 또는 만일 합병된 다면 이 지방정부경계법에서 전체 토지가 한꺼번에 합병된다.</p>	
<p>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변경</p>			<p>- 시사점 부분 매립지 지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령 참조</p>		
<p>소속미정 지역</p>	<p>·관련 규정 없음</p>	<p>·관계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의견과 관계 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이 정하여 고시(§7의2)</p>			
<p>신규토지</p>	<p>·관련 규정 없음</p>	<p>·시정촌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 도도부현</p>			

		지사가 고시(§9의5)		
<p>이의절차</p>	<p>·관련 규정 없음</p>		<p>171.081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 (1) 시정부가 합병에 대한 법적절차를 따르거나 또는 설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피해 당사자는 그 시정부가 속해 있는 county의 지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에 대한 청원제기는 합병조례통과 이후 30일 안에 또는 분쟁조정과정의 완료후 30일안에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p> <p>(2) 피해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합병조례통과 후 30일안에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만일 분쟁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완료후 30일 안에 그 시정부가 속한 지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법 제L2112-1조 :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은 국가의 지방대표자인 임명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도시자령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결정한다.</p>

— 독일

§ 19 Verfahren bei Gebietsänderungen

- (1) Die Gemeinden haben vor Aufnahme von Verhandlungen über Änderungen ihres Gebiets die Aufsichtsbehörde zu unterrichten.
- (2) Vor jeder Gebietsänderung ist der Wille der betroffenen Bevölkerung in der Weise festzustellen, daß den Räten der beteiligten Gemeinden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gegeben wird. Außerdem sind die Gemeindeverbände zu hören, deren Grenzen durch die Gebietsänderung berührt werden.
- (3) Änderungen des Gemeindegebiets bedürfen eines Gesetzes. In Fällen von geringer Bedeutung kann die Änderung von Gemeindegrenzen durch die Bezirksregierung ausgesprochen werden, wenn die Grenzen von Regierungsbezirken berührt werden, ist das Innenministerium zuständig. Geringe Bedeutung hat eine Grenzänderung, wenn sie nicht mehr als 10 vom Hundert des Gemeindegebiets der abgebenden Gemeinde und nicht mehr als insgesamt 200 Einwohner erfaßt. Die Sätze 2 und 3 finden auch in dem Falle Anwendung, daß eine Gemeindegrenze durch Gesetz festgelegt wurde, wenn seit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zehn Jahre vergangen sind; gesetzliche Vorschriften, die die Änderung von Gemeindegrenzen bereits zu einem früheren Zeitpunkt zulassen, bleiben unberührt.
- (4) In dem Gesetz oder in der Entscheidung nach Absatz 3 Satz 2 sind die Gebietsänderungsverträge oder die Bestimmungen der Aufsichtsbehörde über die Einzelheiten der Gebietsänderung zu bestätigen.

— 미국

- 171.0413 Annexation procedures (2) - (b) The governing body of the annexing municipality shall publish notice of the referendum on annexation at least once each week for 2 consecutive week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referendum in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area in which the referendum is to be held. The notice shall give the ordinance number, the time and places for the referendum, and a brief, general description of the area proposed to be annexed. The description shall include a map clearly showing the area and a statement that the complete legal description by metes and bounds and the ordinance can be obtained from the office of the city clerk.
- (3) Any parcel of land which is owned by one individual, corporation, or legal entity, or owned collectively by one or more individuals, corporations, or legal entities, proposed to be annex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not be severed, separated, divided, or partitioned by the provisions of said ordinance, but shall, if intended to be annexed, or if annex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be annexed in its entirety and as a whole.

— 미국 : 구역조정절차 - 171.0413 Annexation procedures (5)

(5) If more than 70 percent of the land in an area proposed to be annexed is owned by individuals, corporations, or legal entities which are not registered electors of such area, such area shall not be annexed unless the owners o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land in such area consent to such annexation. Such consent shall be obtained by the parties proposing the annexation prior to the referendum to be held on the annexation.

171.044 Voluntary annexation (자발적 합병절차) : (2) Upon determination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municipality that the petition bears the signatures of all owners of property in the area proposed to be annexed, the governing body may, at any regular meeting, adopt a nonemergency ordinance to annex said property and redefine the boundary lines of the municipality to include said property. Said ordinance shall be passed after notice of the annexation has been published at least once each week for 2 consecutive weeks in some newspaper in such city or town or, if no newspaper is published in said city or town, then in a newspaper published in the same county

— 미국 : 합병에 대한 이의제기

171.081 Appeal on annexation or contraction : (1) Any party affected who believes that he or she will suffer material injury by reason of the failure of the municipal governing body to comply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annexation or contraction or to meet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for annexation or contraction as they apply to his or her property may file a petition in the circuit court for the county in which the municipality or municipalities are located seeking review by certiorari. The action may be initiated at the party's option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nnexation or contraction ordinance or within 30 day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subsection

(2) If the affected party is a governmental entity, no later than 30 days following the passage of an annexation or contraction ordinance, the governmental entity must initiate and proceed through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established in chapter 164. If there is a failure to resolve the conflict, no later than 30 day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cedures established in chapter 164, the governmental entity that initiated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may file a petition in the circuit court for the county in which the municipality or municipalities are located seeking review by certiorari.

— 프랑스 지방자치법 : 법률조항 L.2112-6 조

Tout projet de modification des limites territoriales des communes est soumis à l'avis du conseil général : 1° Lorsque le projet tend à modifier les limites cantonales ;2° A défaut d'accord des conseils municipaux et des commissions syndicales intéressés sur les changements proposés.

Art. L. 3112-1 : Les limites territoriales des départements sont modifiées par la loi après consultation des conseils généraux intéressés, le Conseil d'Etat entendu. Toutefois, lorsque les conseils généraux sont d'accord sur les modifications envisagées, celles-ci sont décid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프랑스 구역조정절차 : 법률조항 L.2112-3 조~4 조 구역경제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Art. L.2112-3 : Si le projet concerne le détachement d'une section de commune ou d'une portion du territoire d'une commune, soit pour la rattacher à une autre commune, soit pour l'ériger en commune séparée, un arrêté du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institue, pour cette section ou cette portion de territoire, une commission qui donne son avis sur le projet. Le nombre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est fixé par cet arrêté.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choisis parmi les personnes éligibles au conseil municipal de la commune, sont élus selon les mêmes règles que les conseillers municipaux des communes de moins de 2 500 habitants. Sont électeurs, lorsqu'ils sont inscrits sur les listes électorales de la commune, les habitants ayant un domicile réel et fixe sur le territoire de la section ou de la portion de territoire et les propriétaires de biens fonciers sis sur cette section ou portion de territoire. La commission élit en son sein son président.

— 프랑스 구역조정절차 중 중재 및 결정절차 : 법률조항 L.2112-1조

Art. L.2112-1 : Les contestations relatives à la délimitation du territoire des communes sont tranchées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s intéressent les communes d'un même département. Les contestations intéressant des communes de deux ou plusieurs départements sont tranchées par décret.